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10,894,491	18,326,835
일반회계	601,955,930	18,058,678
특별회계	8,938,561	268,157
기타특별회계	8,938,561	268,157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228,161	6,845
건축진흥특별회계	201,625	6,049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762,906	22,887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1,284,066	38,522
삼계도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2,330	970
드림빌특별회계	934,962	28,049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48,044	7,441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90,116	2,703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36,306	13,08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720,045	141,60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4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